

# 제3차 BBNJ Prepcom 논의동향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정의와 이익공유-

모영동\*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대외협력부

## Reviewing Discussion on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during the 3<sup>rd</sup>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Youngdawng Moh\*

\*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Office of External Affairs

**핵심용어 :** 해양유전자원, 이익공유, 인류공동유산원칙, 공해자유원칙

**Key Words :** Marine Genetic Resources, Benefit Sharing, Common Heritage of Mankind, Freedom of High Sea

### 1. 개요 및 연구목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이다.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서 해양수산생물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효율적 관리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1) 국가관할권이 없는 해양이 전체 해양의 6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관할권이 없는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법적 논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설립목적이며 국가가 부여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 2. 연구방법

국가관할권이 없는(ABNJ)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문서 성안준비위원회는 크게 네 가지 안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양유전자원의 법적정의와 이익공유의 범위, 환경영향평가, 해양보호구역 포함 구역기반관리,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안건 중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해양유전자원의 법적정의와 이익공유의 범위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중략)

### 3. 결과 및 고찰

해양유전자원의 법적 정의와 이익공유에 있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뚜렷이 양분된다. 이 두 가지 양분된 의견은 각각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큰 원칙인 공해자유 원칙과 인류공동유산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중략)

선진국은 공해자유원칙에 근거하여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함께 제한된 범위의 이익공유를 주장하고 있다. (중략) 이에 반하여 개발도상국은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을 해양유전자원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인류공동유산원칙은 심해저와 그 (광물)자원에만 적용되는 특별원칙으로, 동 원칙이 ABNJ 전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으로 선진국들은 대응하고 있다.

...(중략)

### 4. 결론

이 두 원칙간의 대립을 살펴보면, 공해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으나 성안은 단순히 법적 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략)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략) 산업화와 직결되는 원천소재인 파생물 및 유전정보 등이 이익공유의 대상이 될 경우 연구개발에 미치는 부담이 증가될 것인바, 이익공유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가급적 ‘현지내(in situ)’로 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 First Author : ydmoh@mabik.re.kr, 041-950-0716

1)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